


201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초·중등 및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9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제 출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초중등 및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 2013. 6.~9.

연구책임자 : 문성배(부산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왕근(춘천교육대학교)

연구보조원 : 박상준(부산대학교)

정덕교(당곡고등학교)

이금이(강원도교육연구원)

이 연구는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혀 둡니다.

요 약



가. 초·중등 학생선거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는 학교의 절차적 도움을 받아 학생 스스로 실행하는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학교 활동이다. 현재 실행되는 선거를 살펴보면, 교사 및 학부모의 직간접적인 선거 개입이 이루어져 자치 활동의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학생들의 경우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의 남발, 향응 제공, 유권자의 후보선택 능력 미흡, 성인을 모방한 과열 선거, 선거에 관한 무관심 등 크게 7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생회장 선거는 일차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활동이기는 하나, 학칙의 틀이라는 제도적인 조건과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래된 교육 관행 내지는 전통에서 비롯된 학교 문화가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무관하게 교사 또는 학교 수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셋째, 학생회장 선거에 학부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실제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 자치 활동의 취지에 역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표준선거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각 교육청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미래에 민주시민으로서 선거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대학 총학생회 선거

대학 총학생회 선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부정선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대학사회를 통하여 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대학 총학생회 선거는 자치활동이라는 명문 때문에 선거과정이나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많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성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틀 속에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선거공영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형태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본부의 무관심을 해소하고 공정한 선거와 일반 학생들의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매우 어렵고 부정선거의 대부분을 눈감아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예산 지원으로 선거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학생처장이 위원장으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선거 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학생으로 선발하

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대리투표 등의 부정선거를 차단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세력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아울러 선거공약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학내의 자율적인 선거를 통한 권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의 학내 민주화에 대한 단계가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3. 이론적 배경 4

II. 초중등 학생회장 선거실태·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실태 및 문제점 8

 가. 학생의 선거참여 실태 8

 (1) 지킬 수 없는 공약의 남발 8

 (2) 선물이나 음식 제공 10

 (3) 성인을 모방한 과열 선거 11

 (4) 유권자의 후보 선택 능력 미흡 12

 (5) 선거에의 무관심 13

 나. 학교의 선거문화 14

 (1)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 14

 (2) 무관심을 조장하는 학교 여건 16

 다. 학부모의 선거 개입 17

 (1) 학부모의 선거 개입 17

 2.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개선방안 20

 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대 20

나. 학생회장 표준선거 규정 제정	21
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의식 제고	21
라. 학생과 학부모 대상 다양한 선거교육 프로그램 운영	23
마. 학부모의 불공정 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선거과정 참여 확대	23
3. 초중등학교 학생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24
가. 운영실태 및 문제점	24
(1) 학생자치회에 대한 개념과 목적의식 불분명	24
(2) 학생자치 영역 부족	26
(3) 학생자치회의 절차적 형식화	28
(4)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 의사의 소외	29
(5) 학생회 임원의 운영 능력 미흡	31
(6) 운영 시간 부족	32
나. 개선방안	33
(1) 학생회 회칙 개정	33
(2) 학생자치에 적합한 학교문화 조성	35
III.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실태·문제점 및 개선방안	36
1.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실태 및 문제점	36
가.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개입	37
나. 선거운동원·일반학생들의 대리투표	40
다. 외부 선거개입	43
라. 기타 부정선거 사례	46
2.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개선방안	47

가.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 제시 및 수용성 제고	47
나. 전자투표제 도입	48
다. 대학 학생회장 선거 중앙선관위 구성에 대학본부 참여	49
라. 선거과정에 일반학생 참여 확대	50
마. 선거공영제 도입	51
 IV. 결론 및 제언	 53
<부록1>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	56
<부록2>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	68
 □ 참고문헌	 151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에 기반한 세계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집단적 참여를 통해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려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그에 비해 이러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나 시스템이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적 불안 심리와 불신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세계화 현상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 의식’,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반 한 선택과 결정이 중시되는 사회 시스템’, ‘설득과 신뢰에 기반 한 리더십’, ‘참여 민주주의에 기초한 강한 시민 사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 자치 활동의 여러 폐해 및 해결 방안 역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와 학교가 우주와 소우주와 같은 동형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 현상이 학교에서도 동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에 적합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초한 학교 문화를 정착해야 하며, 학교 수준의 자치 활동이 국가 수준의 자치 활동과 동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에 대한 주장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기로 한다.

첫째, 바람직한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 문화를 모색하기로 한다. 선거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민주적인 행태들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정도보다 문화에서 비롯되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문화는 세대를 이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징 권력으로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사고와 행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된 참여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참여 효능감은 자신의 참여가 학생 자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는 바, 참여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회장 선거 및 학생회 운영에 능동적이면서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연구 내용 범주를 설정하기로 한다. 첫째,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¹⁾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범주로 설정하기로 한다.

둘째,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의 모색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삼기로 한다. 특히 대학교의 경우 선거 자금과 관련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선거규정 내 선거자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적용할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초·중등 및 대학교의 학생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학생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셋째,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의회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의 질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1) 초등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강원도교육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강원도 내 초등학교 353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등 3개 항목의 질문지를 자유 응답 형식으로 조사하였으며, 153개교에서 응답지를 회수 받아,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동작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 이론적 배경

가 학생 자치 활동으로서의 학생회장 선거

학생 자치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자치 및 주민 자치 원리와 동형적 의미를 지닌다. 자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성과 최고성을 지닌 권력의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지배됨을 의미한다. 학생 자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 정치의 다름이 아니다. 단지 자치의 범주가 국가나 지방과는 달리 학교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주라는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학생 자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민 역량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시민 역량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는 기본 원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학생회장 선거는 이러한 학생 자치를 실현하는 단초가 되는 동시에 학생 자치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학생 대표는 국민 대표나 주민대표의 성격과 다르지 않으며, 선출 방식 또한 다를 수 없다. 국가 수준의 선거 관리가 학생회장 선거에 동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다.

학생회장 선거의 비민주성은 운영의 비민주성을 파생하고, 운영의 비민주성은 자치 활동을 무덤으로 안내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비민주성으로 귀결된다.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학생 자치를 체험하고 예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체험하는 것이 곧 시민 사회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관점은 바로 이러한 경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회장 선거는 단순히 학교 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행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 즉, 학생 자치 활동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학생 자치 활동으로서의 의미 즉, 목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정치 교육으로서의 학생회장 선거

정치는 규정성과 이중성의 성격을 지닌다.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연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서의 존재 의미 이외에 어떤 대립적이고 상반된 의미를 지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상태로 구성되면서 내부와 외부가 규정되고 그 결과 정치 공동체로서의 폴리스가 존재하게 된다. 선과 악, 참과 거짓, 미와 추, 약과 독 등, 사회적 삶에서 작용하는 온갖 이분법적인 차원은 이러한 폴리스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폴리스 그 자체는 안(내부)과 밖(외부)의 성격이 동시에 들어있는 양가성을 지닌다.²⁾ 그래서 폴리스적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상반된 양가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지닌 대립을 파생한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폴리스가 지니는 양가성을 파르마콘(Pharmakon)으로 표현한다. 파르마콘은 약이면서 독이고, 약이 아니면서 독도 아니라는 양가적 의미를 지닌다. 파르마콘은 말씀, 진리, 로고스, 절대, 객관, 본질 등과 같은 자기 근원성과 자기 동일성을 해체한다. 그래서 파르마콘은 차이와 연기 즉, 차연(差延)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중성의 의미를 지닌다.

차이는 같지 않지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같음', '다름'이라는 이분법적 용어로 현상을 설명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2)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들어 있다는 말은 내부도 외부도 들어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있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타당성을 상실한다. 같음도 다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같지 않고 다르지 않음만이 존재한다.³⁾ 같지 않고 다르지 않음은 다름과 같음에 의해 오염되고 흔적 지워져 있음을 동반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중성을 지닌다. 즉, 같지 않음은 다름에 오염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같음에서 파생하고, 다르지 않음은 같음에 오염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름에서 파생하기 때문이다.

연기는 의미의 규정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수정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규정한 정의의 의미는 그 자체로 불변하는 객관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추후의 다른 개념, 예를 들면, 자유, 평화, 권력, 자본, 양심, 경쟁 등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구성된다. 즉, 정의의 의미는 다른 것에 의해 연기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폴리스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의미는 다른 규정에 의해 연기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⁴⁾

정치가 지니는 이러한 차연적 성격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에게 요구하는 자질에서 논리적으로도 연역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정치에서 시민에게 요구하는 대화, 비판, 합의, 참여 등과 같은 능력은 구성원들의 인식과 신념이 대립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인식과

3) 여기서 의미하는 같음/다름은 폴리스에 의해 규정된 선/악, 진/위, 미/추, 약/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정치의 성격을 차연성에서 해석하는 본 고의 관점은 데리다(J. Derrida)가 말하는 차연에 유비된다. 단지 데리다의 경우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논쟁에서 차연 개념에 기초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비해, 본 고에서는 정치가 규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반규정적인 반작용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규정성과 반규정성 사이에 차이와 연기 즉, 차연 현상이 재귀적으로 반복된다는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다.

신념이 차이와 연기의 관계에 있음을 동시에 함의한다. 즉, 구성원 모두는 사실과 당위의 차원에서 동시에 차연의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이나 당위 어느 한 차원에서라도 차연의 관점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는 대립을 통해 투쟁과 복속의 장으로 내닫는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러한 현상을 경험해 왔으며, 현재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목도하는 현상이기도 한다.

학생 자치 활동으로서의 학생회장 선거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이 차연의 관점을 경험하는 가운데 대화, 비판, 합의, 참여를 통해 이분법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이러한 정치 행위를 통해 보다 성숙된 시민 역량을 습득해 간다는 점에서 정치 학습 즉, 정치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학생회장 선거에 임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전통과 미래,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 학교의 실태, 학생의 요구와 기대 등에 대한 인식의 대립 즉, 쟁점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선지식에 의존해 선거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 임하는 학생들은 쟁점과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대화, 비판, 합의, 참여 등을 통해 차연을 경험하고,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선거는 다른 아닌 정치 행위이자 정치 교육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선거 경험이 예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성숙하게 한다.

Ⅱ. 초중등 학생회장 선거실태·문제점 및 개선방안⁵⁾

1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실태 및 문제점

초중등 학교 학생회장 선거는 학교의 절차적 도움을 받아 학생 스스로 실행하는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학교 활동이다. 그러나 실제 실행되는 선거를 보면 교사 및 학부모의 직간접적인 선거 개입이 이루어져 자치 활동의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학생회장 선거 실태를 학생, 교사, 학부모로 범주화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가 학생의 선거 참여 실태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킬 수 없는 공약의 남발, 향응 제공, 유권자의 후보선택 능력 미흡, 성인을 모방한 과열 선거, 선거에 관한 무관심 등 크게 5개 유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지킬 수 없는 공약의 남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경향은 칸트(Kant) 이래 목적-수단 합리성이 만연하면서 역사와 사회를 지배해왔던 대표적인 사고방식이다. 자분의 속성이 그러하고 관료주의의 성격이 그러하며, 개인 중심의 이해 지상주의 관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정부 수준에서 실시되는

5) 실태 및 개선 방안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중등학교의 사례가 있을 경우 부연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키지 못하는 공약의 남발이라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학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학생회장 선거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목적·수단 합리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 6)

▣ 추상적인 공약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환경이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등 이미지와 관련된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을 제시한다.

▣ 학생회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공약(체육 수업을 더 많이 하겠다. 점심시간을 늘리겠다. 학년별 축구대회 토너먼트를 학기당 한 번씩 열겠다. 창의체험학습을 ○회 ○○○회 가겠다. 등)이나 학교 규칙과 관련된 공약(복장, 두발, 등교시간 등)을 거리낌 없이 한다.

▣ 정부에서 주어지는 학교 예산과 관련된 공약

학교 시설(놀이터, 체현실, 휴게실, 교내 매점 등)을 설치, 교체한다.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 주겠습니다. 급식에 햄버거, 한우 볶고기, 힌, 나면 등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등

6) 사례는 회수된 질문지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옮겼다. 원 자료의 생생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문장이 어색하거나 비문인 경우가 있음을 밝힌다.

▣ 공약 이행의 의지가 없는 공약

매일 학교를 돌아다니며 청소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모범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등의 공약을 통해 당선된 뒤 전혀 속선수범하지 않는 경우

(2) 선물이나 음식 제공

선거는 유권자의 자발적 신뢰에 기초한 지지를 표현하고 확인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신뢰는 평상시의 누적된 행적과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에 대한 자신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물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학생 수준에서 선택하게 되는 일반적이면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해된다. 흔히 나타나는 사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사례

▣ 선물 및 음식 제공

부회장 후보인 나간 오빠가 자기 뽑아달라며 나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였고 사탕도 제공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선출되면 치킨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물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함(이후 공약을 발표할 경우 달달 교사가 견토타드 즉 조치함). 후보자(부모 포함)가 유권자(친구, 후배)에게 교내에서 과자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선거분위기를 흔탁하게 몰아가는 사례를 본적이 있음. 본인이 회장으로 당선되면 각 학급에 농구공과 축구공을 제공하여 뛰어놀 수 있는 공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당선된 후 실제로 축구공과 농구공을 100여개 교실로 배부함.

[3] 성인을 모방한 과열 선거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의 이유와 근거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높으며, 그 외부가 사회 내지는 성인의 행위인 경우가 많다. 즉, 행위를 모방하면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자는 당선을 목표로 선거 운동을 과열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열 선거 운동 자체에서 흥미와 자존감을 확인하는 경험을 통해 과열 선거 운동을 즐기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학생회장 선거가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성인의 선거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선거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례

▣ 과열 선거 운동

민주적 의사결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교육적 혼란을 고려하여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른들의 선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인. 홍보용 포스터, 명함제작 배포, 선거활동 등이 과열되고 있음. 아이들이 선거 유세를 할 때 서툰 비방하고 심지어 싸우는 경우까지 있었음. 선거철에 학생들이 또 덩치런 무리지어 학교 내 교실과 복도를 다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음. 등교 후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복도나 운동장 등의 장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몰려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유세를 하는 것. 어느 한 특정 구역을 정해 놓고 그 구역에서만 건전한 홍보를 하였으면 함.

[4] 유권자의 후보 선택 능력 미흡

정치인의 의식 수준은 국민의 의식 수준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학생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동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유권자로서의 학생의 의식 수준 즉,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 학생 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헌신,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책무 의식 등이 학생회장 선거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 교육은 아직 미흡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사례를 이를 잘 대변해 준다. 단위 학교에서 선거와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선거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사례

▣ 판단 능력의 부족

언변이 좋은 사람이 뽑힌. 자질이 안 되어 문제가 됨. 후보자의 인기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생 유권자 중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음. 공약보다는 후보자의 외모, 유머 감각 등에 치중해 판단을 내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질을 갖춘 학생이 당선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음. 초등학생이다 보니 공약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낭설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교 학생회 선거에서 인기나 외모, 유머 등 자치회 입원으로서의 자질과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많은 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음. 즉, 선거에 입하는 학생들의 의식이나 태도에 문제가 많음.

▣ 연고에 의한 선택

회장을 할 자질이 부족함에도 그 아이가 무서워서 뽑는 경우가 있음. 친한 친구관계라고 뽑기도 한다.

▣ 제도적 요인

전교 인원 선거가 3월에 실시되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알리고 홍보하는 시간이 짧아서 유권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음.

(5) 선거에의 무관심

무관심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상에 대한 혐오감, 개인 이해 관계에의 몰두, 효능감의 상실, 권위주의 문화 등이 그것이다. 정치에 관한 성인들의 무관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생회 선출 및 운영에 있어서 소외되는 가운데 자치 효능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관련자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선거 효능감도 상실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를 비롯한 학교의 기저에 작용하고 있는 권위주의 문화, 그리고 학생 개인의 이해를 추구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무관심 현상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요인들 역시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극복해야 할 일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이 수반될 때, 학생 자치 활동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 학생들의 무관심

갈수록 전교 학생회에 관심을 갖고 출마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선의의 경쟁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공약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 시골 작은 학교에서는 과외보다는 소극적인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함. 특히 남학생들이 더 소극적인.

나 학교의 선거 문화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생회장 선거는 일차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활동이기는 하나, 학칙의 틀이라는 제도적인 조건과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래된 교육 관행 내지는 전통에서 비롯된 학교 문화가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무관하게 교사 또는 학교 수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선거와 관련을 맺는 학교 문화와 학교 여건의 측면에서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

학생회장은 학생 자치를 통해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동시에 학교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을 맺지 않는다. 회장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후보자의 입후보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대표와 학부모회 대표가 한 가족이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가문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나타나는 다른 여러 부정적 유형의 이면에는 이러한 요인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외부의 도움이나 국가 수준의 제도적 지원과는 관계없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결단에 의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 학생회장 부모는 학부모 단체 임원이 되어야 하는 여건

학생회장의 학부모가 학부모대표가 되어야한다는 원칙 때문에 실제로 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입후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전교어린이회장단 학부모를 학교 학부모회 임원으로 떠넘기는 관례가 있음. 본교의 경우 전교학생회 임원이 되면 학부모회 임원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학부모회 임원을 맡지 않으려면 전교학생회 임원으로 나가지 말라는 무언의 양력 등이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으로 대두되었음. 전교학생회 임원으로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 때문에 교육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학생은 출마하고 싶어도 학부모가 망류하는 경우도 있음.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로서 학교 측의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한 부분임. 학생회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전교 학생회 임원이 되는 학생의 부모님이 학부모회 등의 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무언의 양력으로 인해서 선거에 출마하기를 어려워 한다는 점. 전교어린이회 임원이 되면 학부모도 함께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능력 있는 아이들이 선거 출마를 미리 포기

하는 경우가 많음. 전교회장이 되면 해당 학부모가 전교어머니회장이 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나 부모님의 경우에는 거의 불문율처럼 따르는 경향이 강함.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학부모 총회를 실시하고 이어 학생회장을 선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기존처럼 학생회장을 먼저 뽑고 학부모 총회를 함으로써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형태라고 보임.

(2) 무관심을 조장하는 학교 여건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학생의 무관심은 학생 자신에서 비롯된 무관심 즉, 의식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성장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와 관련해서 작용하는 환경적 요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학교의 규모, 학교장의 교육관, 교사의 인식, 학칙 등과 같은 요인이 무관심을 조장하는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학생의 의식에서 비롯된 무관심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요인들 역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이 수반될 때, 선거에 관한 학생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 학교 여건에서 비롯된 무관심

도서 벽지의 작은 학교는 후보자란 나설 학생이 부족하여 한 두 명이 어쩔 수 없이 학생회 간부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한 두 명의 후보나 할지라도 등록 후보와 선거유세, 투표, 개표의 선거 과정은 거친다. 본교는 소인수(전교생 50명) 학교로 전교어린이회 구성이 어려울 정도로 열기가 없음. 학

년 초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으로 관심이 부족함. 학교의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음. 전교 인원 선거가 3월에 실시되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알리고 홍보하는 시간이 짧아서 유권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음. 학년 초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으로 관심이 부족함. 학교의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음.

다 학부모의 선거 개입

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주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회장 선거에 학부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듯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 자치 활동의 취지에 역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선거 개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학부모의 선거 개입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학교 중심 교육 과정이다. 최종 선택에 이르기까지 기준에 대한 숙고와 후보자의 성품, 이력, 비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유권자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이 중요하며, 바로 이러한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사회가 기대하는 민주 시민 의식을 성숙시키게 된다. 즉, 지방 자치가 민주주의 학습장이듯이 학교 자치도 동일한 의미와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학생회장 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를 비롯한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고 선거 이후까지도 혼란이 지속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질문지 답변 중, 많은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의 당락이 학부모의 개입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하여 학부모의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 학부모의 직접 개입

학부모가 학생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제공함. 후보자 학부모이면서 동시에 해당 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지지를 협조하는 경우가 있음. 후보자 학부모가 유권자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지지와 협조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선거가 공고되기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선물과 간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자녀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다지는 경우가 있음. 학부모 모임에서 경쟁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정보(폭력 전과, 불훈자, 교통직서 위반 등)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학부모가 전문 광고 업체로부터 선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규칙 준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비합리적인 자기만의 잣대로 민원성 전화를 하는 등 교사의 교육적 권리를 침해함.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규칙 준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비합리적인 자기만의 잣대로 민원성 전화를 하는 등 교사의 교육적 권리를 침해함. 인근학교의 사례를 보면 학생 폭력을 핑계로 학부모가 힘장으로 선출된 학생을 취소하라는 등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회 활동에 개입하는 사건이 있었음. 부모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학부모가 선거 전당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함. 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거공약을 정하거나 노력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모님이 얼마나 더 노력하여 멋진 포스터를 꾸미고 선거 유세

을 써 주느냐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됨. 회장 후보 학부모께서 선거에 개입하여서 전화나 문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뽑아달라고 하였고, 선거가 끝난 후에 '200표 차이로 졌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적이 있다. 전교 학생회 선거가 끝난 뒤 당선된 쪽 학부모와 떨어진 쪽 학부모가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부모의 간접 개입

학원(태권도 도장, 보습 학원, 미술 학원 등)의 강사나 원장이 학생 및 인근 학원의 강사나 원장을 대상으로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있음. 학원 관계자나 학부모의 지인이 선거 공약을 작성해 주는 사례가 있음. 학부모들이 친분, 인맥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뽑도록 선거 운동을 함. 학교 담임선생님을 움직여 무엇을 해주겠다고 공약함(체육시간 늘이기, 축구부 만들기).

2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개선방안

1장에서 논의한 학생회장 선거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5가지 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대

학생회장 선거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공약의 남발, 선물이나 음식 제공, 성인을 모방한 과열 선거 등의 문제점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선거 관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관리는 학생 자치의 중요한 기능으로 학생의 주도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중등학교는 선거 관리에 관한 학칙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칙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교사에 의한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자치 활동의 취지와 본질에 비추어 학생회장 선거가 지니는 의의가 중요한 만큼 선거에 수반된 선거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앞에서 논의한 관심과 비판적 참여 의식도 학생 중심의 선거 관리가 전제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을 비롯한 학생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과 조직을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후보자 공약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약의 현실 적합성, 의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심의함으로써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동시에 선거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생회장 표준선거 규정 제정⁷⁾

현재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 규정은 개별 단위 학교에 일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마다 학생회의 구성 방법이나 운영 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6월에 학생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연간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시기이자, 곧 바로 방학이 시작되고 입시 준비에 전력을 다하는 2학기가 이어져 학생회 활동이 유명 무실하게 운영된다. 그리고 다음해 6월까지의 임원진의 상당수가 졸업한 상태여서 식물 학생회 상태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8년에 학교 선거 메뉴얼을 개발했다. 부분적인 수정, 보완⁸⁾ 및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 선거 표준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단위 학교에 일임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권위주의 학교 문화가 지배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선거 정치 교육에 부응하는 학생 자치 활동이 실행되기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의식 제고

선거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학생의 문제점으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의 남발, 선물이나 음식 제공, 성인을 모방한 과열 선거, 유권자의 후보 선택 능력 미흡, 그리고 선거에의 무관심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학교 교육의 부실이 기본적인 원인으로

7) 학생회장 표준 선거 규정의 예시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학생회 임원 선거규정(예시)을 토대로 부분 수정 보완하여 부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수정하고, 학생회 구성을 대의 기구와 집행 기구로 이원화 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입시 중심으로 학교 교육, 권위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비민주적인 교사 의식 등이 구조적으로 작용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은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의 인식 전환 및 학생 자치 활동 교육의 강화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회장 선거는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중요한 교육 행위라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 지녀야 할 의식이 있다. 자치 활동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 효력, 한계 등은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치 활동의 기능은 학생 봉사, 복지 등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정, 수업, 교사 평가 등의 영역이 학생회 기능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생자치 활동에 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생회 활동을 통해 일체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행위 주체로 활동할 때 비로소 학생 중심의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학생회장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한편,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근거한 참여에서 시작된다. 즉, 교사나 학교장의 시혜적인 학교 운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초한 학교 운영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회는 학생들이 선거에 관한 관심과 비판적 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학생회 주도의 세미나, 홍보, 집담회,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학생과 학부모 대상 다양한 선거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 일부 실태를 제외하면, 대부분 선거 의식이나 문화에서 비롯된 실태들이다. 그리고 의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교육에서 마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회 선거와 관련된 의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학생회 선거의 본질과 성격, 선거의 실태(의식과 문화), 선거 정치와 리더십, 참여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선거 연수원이나 선거 관련 시민 단체, 연구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학부모의 불공정 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선거과정 참여 확대

학부모의 선거 개입은 배타적인 자녀 사랑과 경쟁중심의 서열화 사회, 권위주의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성인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부정 선거 운동의 모방 심리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기본적으로는 의식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는 한편, 다음과 같이 학부모 스스로 선거 관리에 참여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추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선거 관리 위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홍보와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학부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부모 집단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선거 운동 사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의 협조를 통해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회장 선거 관련 전용 페이지를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불공정 사례를 고발하는 등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초중등학교 학생회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초중등학교 학생회 운영은 학생회장 선거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생 자치 즉, 집단적 개인적 참여의 의의에 대한 이해와 효능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회 운영은 선거 정치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초중등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크게 학생 자치회 운영에 대한 목적의식 부재, 학생 자치 영역의 부족, 학생 자치회의 절차적 형식화,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의 소외, 학생회 임원 자질 부족, 운영 시간 부족 등 6개 유형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학생자치회에 대한 개념과 목적의식 불분명

학생 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체인 학생들이 자치회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목적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의 취지가 구현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학생들의 목적의식 부재는 일차적으로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의 책무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입시위주의 학교 문화가 학교장,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에게 부재 권력과 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시선이나 언론의 관심, 학교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이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자치권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지 못함을 들 수 있다. 학생 자치가 자치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를 따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소외된 그래서, 학생들로부터도 소외된 학생 자치회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 전교어린이회의만큼 학생회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전, 초등학생이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므로 학생회 담당 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학생들의 민주적인 교육 부족과 학교 측에서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 학교자치의 개념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회의 역할이 어린이회 진행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생회 또한 스스로가 주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 학교에서도 새로운 학생회상에 대한 열의가 없고 기존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음. 어린이회 지도교사 및 학교장의 어린이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필요함. 학생회 활동은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교 어린이 회의’ 활동이나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입원 수련회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됨.

학생회가 스스로 할 일을 생각하고 의논하여 결정하며 그것을 학교생활에 반영할 수 있기까지는 더 많은 자질과 역량의 신장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의 여러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학생자치 영역 부족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가능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학습 환경, 수업 방식, 교사 평가, 학생 인권 실현 등의 영역에서 실현 가능성과 현실 적합성을 고려해서 참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회의 의결 영역은 대부분 주생활목표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 스스로 품성 교육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실정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잘 지키자. 교통 규칙을 준수하자. 교실 환경을 깨끗이 하자. 등과 같이 학습권과 관련되기 보다는 사회화와 관련된 규범의 내면화와 관련된 것들을 들 수 있다. 학생 자치 활동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비판이 가능해 진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사례

▣ 학생회가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미흡함. 생활목표 및 실천사항 결정 등의 회의 운영에 그치고 있음. 초등학교에서 학생회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주생활목표 선정과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며 학생회의 전교입원들도 학교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안이 그다지 많지 않음. 근본적인 문제인데... 학생회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일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다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고자 하는 문제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부러 학생회가 참여할 일을 만들고 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키라는 등의 조항을 만들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의식 개선의 문제라고 봅니다.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생들이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는 일은 없음(학교생활규칙 제정에는 참여함). 말 그대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참여할 일이 많지 않음으로 해서 해당 어린이들이 책무감을 느끼기가 매우 어려움. 학교에서 학생회가 참여할 일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일이 많지 않으며 대다수 학생 생활에 관한 개선점을 회의 안건으로 삼고 있음. 굳이 전교 학생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적은 인원의 학교이다 보니, 급식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두런두런 이야기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회가 주관하여 학교 행사를 운영해 보는 경험이 있었으면 함. (물론 초등학생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작은 규모의 바자회 같은 행사를 한다면 의미 있을 것 같음.).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교 학생회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활지도 목표를 정하고 생활지도의 반성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회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나 홍보 캠페인 등을 활성화시킨다면 형식적인 학생회 운영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회장, 부회장의 역할문제 : 학교 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자치회의 느낌이 들지 않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 같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기보다는 담당교사 주도하에 회의나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학급 회장 부회장 아이들도 전교 어린이회이나 학생회 활동 참여하는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음. 학생회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학교 학생회장은 아직 어디다보니 스스로 학생회를 이끌어가며 공약을 실천하기보다는 담당 교사가 시키는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음. 공약은 공약대

린 활동은 활동대로 운영되며, 학생회장의 자발적 활동이 부족함. 사실 딱딱 학생회지 학생을 대표하여 일을 한다고 보여 지지 않은 학생회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사 등 대부분의 학교교육 일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의견 반영이 극히 제한적임.

[3] 학생자치회의 절차적 형식화

절차적 형식화는 학생들을 학교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표로 간주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학생 자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위 학교에서 이를 실천할 여건이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형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대변하는 교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 학생회가 옛날회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앉건도 댕댕교사가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 현재 문제가 되고 학교 실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학생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례적인 행사로 생각함. 내 생각이 아닌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강화하여 참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생회가 조직이 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는 하나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자발적인 운영이 아니고 단지 학교를 대표함. 학생회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주 생활에 대해 반성

을 하고 새로운 주간 실천목표를 세우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회의일 때가 많고 실제로 학생회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어떤 행사를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 형식적인 절차만 중시하는 따은 전교어린이회의. 학생회가 자치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전교 학생회를 구성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형식적이거나 학생회를 조직하고 연중 형식적인 회의나 운영으로 하는 학교가 있음. 전담 지도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어린이회 운영을 지도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회의 진행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학생회 학교운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당선자의 운영능력이나 의지도 미흡하고 지도교사의 지도 또한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생회가 참여할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지도교사의 의지, 학교장 마인드, 당선자의 능력과 열정이 어우러진다면)

(4)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 의사의 소외

앞에서 논의했듯이 학생자치회의 참여 영역이 학생의 품성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나, 절차적 형식화에 지나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학생 자치는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비단 운영에서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학생 자치 활동의 존립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 사례와 관련된 교사의 의견에서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무기력함과 부정적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학생자치회의 주체적 운영의 목적의식 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형식적 선거적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큰 문제점은 말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지만 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깊은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회 댁담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적 운영 방법에 따라 학생회 운영의 모습이 많이 다름.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학교 운영에 학생회 의견을 크게 중용하게 여기지 않으며, 상호 협력, 의논, 보완 관계에 있지 않음. 회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의 같은 안건과 의견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전교어린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학교 운영에 별로 반영되지 않음. 때문에 아이들도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고 귀찮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회의 결과로 요구되는 각종 사항들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각종 건의사항들은 학교 운영에 참고가 될 것들이 많은데, 회의 결과가 학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보고가 되더라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교어린이회 이외의 활동이 거의 전무한 경우도 많다. 주기적으로 전교어린이회의가 열리지만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음. 학생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에서도 큰 관심이 없고, 학생들도 큰 관심이 없음.

[5] 학생회 임원의 운영 능력 미흡

앞 절의 학생회장 선거 실태에서 논의했듯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회장단은 태생적으로 운영을 위한 역량 부족을 과생한다. 선물이나 음식 제공, 제 3자의 개입, 선거에의 무관심 등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결과인 셈이다.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학생회 임원의 운영 능력과 관련된 실상을 알아보기로 하자.

 사례

▣ 학생회 인원들이 인원 감투에 만족할 뿐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당선자의 책임의식, 운영능력, 추진력 등이 대체로 부족함. 운영 내용이 미흡하고, 형식적이며, 조직적 운영 능력이 부족함. 회의 진행 유경 등이 미숙함. 학생회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학생회의에 잘 참여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등 북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소수의 학생 중에서 멀려서 어부지리로 된 경우 소극적이며, 미온적이다. 전교회의 시간에 회장이 시비를 걸기도 한다. 회의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학생회를 운영. 당선자의 리더십 및 책임의식 부재로 학교의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는 학생회 운영(과제를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주고자 해도 남의 일인 양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문제, 이럴 경우 지도자도 지도 의욕 감퇴). 토론이나 회의 등 의사소통 능력이 학생회 구성원마다 개인차가 커서 회의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진지하게 논의하고 들으려는 태도가 요구됨.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생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능력 부족 등. 학생회의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어서 어수선하다. 학급회의 진행이 좀 부족함. 애들이(학생들) 회의할 때 발표를 잘 안하는 것 같다. 당선자가 한쪽 편만 들어 준다.

[6] 운영 시간 부족

학생회 운영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해지는 시간이다. 앞에서 논의한 절차적 형식화를 대변하듯이 운영 시간 역시 최소한의 시간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숙의(심의)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숙의, 진정한 대화, 협상, 문제해결 중심 사고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방과 후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방과후 학교, 사교육, 교사의 지도 여력 등의 여건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 전신시간을 이용한 자치회 운영으로 시간이 부족함. 방과후 학교, 스포츠 클럽 행사, 학원 수강,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생회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할애가 곤란함. 전교 학생회 운영 시간 부족.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에 편성되어 매주 회의 시간이 확보되었으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시수가 적어 대부분 교육과정 외 시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창체 시간이 우선이 되고 학생회 활동은 시간을 따르 내야하는 것인 만큼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과정에서 몇 시간 정도 꼭 이수해야 할 활동이 아니라서 선생님들의 지도 시간 부족 등으로 전교 학생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월 1회나 그 이하로 운영된다 보니 형식만 갖춘 학생회 활동이 되고 있음(예전보다 전교 학생회 운영 및 지도가 미흡한 실정). 학급회의와 전교 회의의 연관성 문제 :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치활동이 창체 시간으로 바

꺀면서 고정적인 회의시간이 없는 영향도 있을 듯 싶음. 전교어린이 회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반영하기 힘든 특성 상,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문제 해결 없이 항상 주어진 형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결정되어진 회의 내용이 학급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어떠한지 의문이 든다. 전교 자치회의든 학급 자치 회의든 창체에 배당된 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회의 운영보다는 학교 또는 학급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졌으면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 활동으로 주당 1시간이 형식적인 학생회 운영이 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실태 분석에서 논의한 학생, 교사 및 학교, 그리고 학부모 등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의 실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교사 및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학생 범주에서 논의한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참여 의식의 제고’는 학교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및 학교가 주도적으로 실행해야할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한다.

[1] 학생회 회칙 개정

학생 자치 활동의 취지 및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학생회 회칙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생회의 기능을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학생 복지 향상과 각종 봉사활동, 민주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학생 권익 보호 활동 등 학생 생활 중 비교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학생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회 결정 사항을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설, 예산 편성, 학습권 등과 관련된 영역이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학생회의 결정 사항이 아무런 구속력이나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자주, 책무, 협동, 공정 등 민주 시민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자치 기구가 결여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후보자의 자격 적부 심사에서부터 세부 일정 수립, 불공정 시비에 관한 판단, 불법 선거의 감시 및 고발 등 학생 자치가 지향하는 자치 경험을 실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생회 회칙은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거나 소홀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회 회칙의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실현될 수 있기를 제안하기로 한다.

- 학생회의 기능 또는 권한 영역을 학교의 모든 교육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사 일정, 예산, 학생 복지, 시설, 교사 평가 등의 영역을 학생회의 기능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학생회의 결정 사항이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교직원 회의를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교직원·학생 회의로

전환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나 예산 등과 같이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항의 경우 학생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국가 수준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동형을 유지하되, 구성에 있어서 학생 대표를 정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하고 학부모 대표, 졸업생 대표, 외부 인사, 교사 대표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2) 학생자치에 적합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왜 필요하고, 무슨 역할을 하며,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는 학교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학생을 단순히 미성숙하여 보호받고, 통제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교사나 학부모 등 성인들은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 주체로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학생 자치 활동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 및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지원에 따른 실행이 여전히 교사 주도의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사의 참여와 지도가 학생과의 협력적인 동반 관계 속에서 수행될 때 학생 자치활동은 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학생들에게 맡겨질 일이 아니라 교사의 주도와 학부모의 협조, 그리고 관련 정부 기관의 지원 속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차적인 책무와 선도는 교사들의 몫이며, 이를 위한 자치 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실태·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실태 및 문제점

총학생회(總學生會, General students' association)은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자치기구를 가리킨다.

역사가 오래 된 총학생회는, 보통 4.19를 전후로 결성되었으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총학생회는 보통 개교와 함께 결성되었다.

4.19 전후로 결성된 단체의 특성상 민주화와 관련이 깊은 조직이 많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 운동권 성향의 정치적 총학생회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어느 정도 민주화가 정착된 2002년을 전후로 학생복지 중심의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고개를 들고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명박 정부 이후 각종 정책과 촛불집회 등의 여파로 인해 운동권 총학생회가 약진을 보이기도 했으며 요즘은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구분자체가 모호해졌다.

대학생들의 조직이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띄는 조직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이해관계 및 대립, 충돌 등이 있어 한국정치의 폐해를 답습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여러 파행 사례, 선거관리위원, 선거운동원 또는 일반학생들의 대리투표 등으로 인한 부정선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 법적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실에 감청장비를 설치하거나 개표 전 사전개봉을 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아닌 외부조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폭력조직과 연계하는 사례도 보도된 바가 있다.

여기서는 총학생회 부정 선거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다.

가.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

6년 연속 투표기간 연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2009년 불미스러운 일이 세 가지나 발생했다. 하나는 투표함이 사전에 개봉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도청이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하나는 이런 일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총학생회 선거를 했는데도 결국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대 X파일’ 혹은 ‘학관 게이트’라 불리는 이번 ○○대 총학생회 선거 부정은 ○○대 담장을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알려졌다. ‘유튜브’에 투표함이 개표 전에 개봉된 적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동영상도 올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문제를 제기한 측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도청했기 때문이다.

○○대의 경우 선관위를 구성한 기존 총학생회가 비운동권 계열이었고 문제제기를 하는 선본은 운동권 계열이었다. 반면 △△대에서는 운동권 계열 총학생회가 구성한 선관위 쪽에서 비운동권 계열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운동권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선거가 치러졌는데 찬성보다 반대표가 많아서 당선되지 못했다.

□□대 총학생회 선거는 기호 2번 측 참관인이 “투표함이 뒤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개표가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유도·태권도·동양무예·

경호학과 등이 소속된 무도대학 첫 날 투표함을 개봉한 결과 489표 가운데 486표가 기호 1번, 기호 2번은 3표가 나와 기호 2번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기호 2번 측은 “우리 측 태권도학과 학생들만 해도 첫 날 200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했다”며 “기호 2번 측 참관인만 첫날 6명이 투표했는데 3표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투표함이 뒤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호 2번 측은 “상대방 후보와 같은 유도학과 출신인 총학생회 선관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관위원장은 투표 종료 뒤 각 후보 측 참관인 없이 독단으로 투표구를 봉인하고, 대학본부가 3개월 이상 폐쇄한 후문을 이용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대는 중앙선관위 측이 특정 선본(이하 B선본)에 대한 ‘등록 거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되었다. B선본 측이 규정보다 음원을 4분 늦게 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선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음원을 늦게 낸 건 사실이지만, 음원 관련 규정이 세칙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도 않을뿐더러, 음원 파일이 저장된 이메일에서 중앙선관위 측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컴퓨터 사용을 요청했는데도 선관위 측이 타 선본의 서류검토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사용을 요청한 때는 아직 등록시한을 넘기지 않았을 때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측은 USB로 제출할 것을 권유했고 B선본 측은 그렇게 했지만, 제출할 때는 이미 마감시각에서 4분 늦어 있었다. 선관위 측은 등록 거부 사유에 대해 ‘B선본 측이 사전에 충분히 등록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구비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서류 제출 후에도 아무런 문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B선본 측은 애초에 음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왜 등록 거부를 하느냐, 중앙선관위 측의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 란 입장이다. 실제로 언론3사 공청회에서, 중앙선관위 측 역시 음원 파일 제출 규정이 불명

확하다는 점과 이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등록 거부 조치를 취소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고 투표를 강행하였다.

2012년, 총학생회 선거 사건·사고 중 가장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은 ○○대다. ‘투표함 바꿔치기’ 등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이 자행된 것.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측의 주도로 이루어져 더욱 큰 파문을 일으켰다. 3파전으로 시작된 ○○대 선거는 당초 현 총학생회 <○○○○>의 후신인 A선본이 약 40%를 득표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 학생이 투표 당시와 개표 때의 투표함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했고, 비교 결과 실제로 그랬다. 학생이 의혹을 제기한 투표함은 F관 건물에 있던 투표함이었다. 이 주장으로 인해 혹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선관위 측은 처음엔 이를 부인했지만, 학보사 등 학내 언론사들이 집중 추궁을 하자 결국 사실을 시인했다. F관의 투표함을 A선본의 표가 든 투표함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당초 ○○대 중앙선관위 측은 ○○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을 11개 대여했는데 이는 예년의 9개보다 2개 많은 수치다. 이 두 개의 투표함을 무슨 용도로 썼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조사 결과 투표함 바꿔치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선으로 선거가 진행된 △△대는 B선본이 후보자 사퇴를 하면서 선거 파행에 이르렀다. B선본 측은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심이 가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사퇴를 하였다고 밝혔다. 발단은 A선본의 참모장이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이라는 점이였다.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시행 요강을 보면, 특정 선본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당해 특정 직위에 올라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하

는 직위는 중앙자치기구장, 특별기구장,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소속 전체 대의원 등이다. A선본의 참모장은 회칙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측은 A선본의 후보자 등록을 승인하였다. 당연히 이에 대해 B선본이 항의했지만 중앙선관위 측은 이를 묵살했다. 결국 격분한 B선본은 선거의 공정성을 성토했으며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이에 따라 A선본이 단독출마하게 되었지만, 과반수(재학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며(58.81%) 선거는 무산되었고 내년 3월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 선거운동원·일반학생들의 대리투표

2013년 3월 치러진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부정의혹이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총대위원회는 선거가 치러진 당일 저녁 개표과정에서 제 23투표구에서 대략 150매 정도의 투표용지가 멩텅이로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등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어 CCTV를 관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총대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가책을 느낀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이 곧바로 총학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고백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과 총무, 두 학우는 150장 정도의 투표용지를 조금씩 모았다가 세 선본에 각각 50장씩 기표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은 문제가 되었던 제 23투표구는 컴퓨터공학과가 단독으로 투표를 하는 곳이라 저조한 학과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대학교의 부정선거는 부정투표의 발생이다. 2009년, ‘제 26대 총학

생회' 회장 선거 개표가 있었고 개표 결과 단독 출마한 ○○○(일반사회·4), △△△(경제·3)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생활조형디자인학과 ◇◇◇ 학회장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후보자 참모장의 부정투표가 밝혀져 당선이 무효되어 재선거를 실시했다.

내막은 이랬다. 총학생회 회장 선거 유세가 2주에 걸쳐 끝나면서, 최종 투표가 진행됐고 개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표 과정 중 정통대에서 IT공학부의 선거인명부가 빠진 채로 봉인된 것이 확인되어서 선거인명부를 다시 가지고 왔지만 부정투표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위)의 입장에 따라 IT공학부의 2백 13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후 개표가 계속 진행되던 중 인문대에서 최초 부정투표가 발견됐다. 개표를 진행하면서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던 중 러시아어학과의 명부에서 비슷한 필체의 사인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 대리투표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중선위의는 개표를 잠시 중단하고 약 1시간에 걸친 회의를 가진 결과 러시아어학과에서 부정투표가 발생 했다고 결론짓고 해당학과의 87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재투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의 개표에서는 또 다른 부정투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 후보의 당선이 확정 됐다.

하지만 당선이 확정 된지 5일이 지나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조형예술대학 생활조형디자인학과 ◇◇◇ 학회장이 부정투표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온다. 글의 내용은 투표를 하지 않은 학과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에는 2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 학회장이 선거인명부를 복사해와 해당 학생에게 투표유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고 ◇◇◇ 학회장은 이 사실을 자유게시판에

알린 것이다. ◇◇◇ 학회장의 의혹 제기에 19일 중선위는 당선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결정한다. 러시아어 학과에서 일어난 부정투표의 경우 후보자 캠프와 연관성이 들어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생활조형디자인학과에서 발생한 부정투표는 일반학생 2명 외 총학생회 선거캠프의 참모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당선자인 ○○○, △△△ 후보의 당선을 취소한 것이다.

○○대학교도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부정투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문이 일었다.

한 투표소에서 공과대학 학생 211명의 학번을 한 공과대 선관위원이 무단으로 도용해 부정투표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 개표 결과 유실표가 211표로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본 선본들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부정선거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공과대 선관위원이 (개표 당시) 부정투표 사실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대의 경우, 2010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A후보가 4,164표를 얻어 B후보(269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더기표 172장이 발견됐다. 제5투표소(4공학관)에서 회수된 투표함에서 일련번호가 이어진 투표용지 172장이 무더기로 여러 장씩 접힌 채 발견된 것. 또,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투표소 2곳을 조사한 결과 대리투표자 11명이 적발됐다.

□□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제41대 총학생회장 투표 후 개표 과정에서 수백표 이상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별도의 ‘총학생회 선거 부정행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농업생명과학대 투표함 3개 가운데 2개에서 동일 후보에 기표된 30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접혀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을 확인했으며, 또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연속적으로 동일인의 것으

로 추정되는 필체의 서명이 발견됐다. 동일인 추정 필체의 서명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가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짧은 시간에 수백 명의 유권자가 몰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한 사람이 대신 서명을 해줬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 총학생회장 선거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선거 자체가 무효화됐다. 22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여. 철학) 후보가 상대후보인 기호 2번 △△△(법학) 후보를 564표차로 제치고 당선됐으나 상대후보로부터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된 것. 기호 2번 후보 진영은 “특정 단과대 투표함에서 수백표의 몰표가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며 총학선관위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고, 총학생회 선관위는 문제가 된 사범대 투표함을 재검표 한 결과 투표함에 몽치로 넣어진 200여 표 등 문제가 된 2개 투표함에 들어있던 1천여 표를 모두 무효처리했다.

다. 외부 선거개입

○○대 △△캠퍼스에서는 모 학과 조교가 학생들에게 특정 선본에게 투표를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조교는 지난달 29-30일 오전에 과제 제출을 위해 모여 있던 학생들에게 “특정 선본에게 투표를 하고 인증사진을 찍어오면 3점을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했고, 16명의 학생들이 투표 후 인증사진을 찍어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선관위는 양측 선본과 합의해 16명의 표를 무효표 처리했다. 해당 조교는 이 사건 이후 조교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는 학교 본부가 총학생회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학교 측은 지난 11월 2일,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을 학생준칙에 기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자격은 학생회칙에 의거해 왔다. ◇◇대 학생준칙에는, 총학생회 등 중앙기구 대표는 6학기 이상 7학기 이내 재학생이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당초 등록 예정이었던 후보자 측에게 선거인명부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선거인명부를 통해 유권자를 파악하는 만큼 선거인명부가 없으면 사실상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이에 중앙선관위 측은 진행 중이던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약 2주 간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 측과 협상을 했다. 그리고 올해는 학생회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학생준칙 상 명기된 후보자의 출마자격을 ‘최대 8학기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생준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학교-학생 간 논의 테이블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기로 했다. 참고로 학생준칙은 학생 생활과 관련한 규칙들을 교칙 차원에서 설정한 규정으로, 현재까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에는 주로 학생회칙이 적용되어 왔다. 학생회칙은 학생준칙과 달리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에서는 선거 세칙을 악용해 상대 선분을 비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 총학 선거는 A, B 선분이 출마해 경선으로 진행됐다. 그간 □□대 총학 선거가 과열된 점을 들어 A 선분은 “우리 선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B 선분은 A 선분이 선거세칙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중선관위에 문제를 제기, 동영상을 제출했다.

증거자료의 동영상에는 밤 시간에 A 선분을 지칭하는 ‘2번’이 적힌 노란 선거운동복을 입은 한 학생의 뒷모습이 담겨있다. 세칙에 정해진 선거

운동 시간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선과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A 선분을 소환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A 선분은 “우리 선분에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못해 궁지에 몰렸다.

이 와중에 한 재학생이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B 선분의 선거운동원들이 A 선분의 선거운동 옷을 구해 선거 세척을 어긴 것처럼 동영상을 조작해 찍은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학내 인근에 설치된 CCTV에서도 해당 선분의 동영상 조작 과정이 찍혔다. 결국 B 선분이 A 선분을 사퇴시키려고 동영상을 조작해 중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선분은 “조작된 영상으로 학생들과 2번 선분, 중선관위를 농락한 주범들은 양심고백 하라”며 학내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사건을 알렸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징계 받고 자퇴해라”, “이들이 총학·부총학 되면 부끄러워서 학교 못 다닐 것 같다” 등 분노했다.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파행선거의 ‘교본’과 같았다. 두 후보가 출마했는데 한 쪽 선분이 상대방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후보 측에서 선거를 보이콧하기 위해 사퇴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먼저 ‘허위 사실 유포’라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그리고 단선으로 출마한 후보가 당선되었다.

라 기타 부정선거 사례

위에 언급된 사례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의 가장 중요한 선거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선거비용의 지출 및 정산, 선거운동 불공정 등 현 집행부 관련 선거본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하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선거 이슈도 학내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당선 이후에는 여전히 대외 문제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총학생회 선거가 일반 학생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2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개선방안

가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 제시 및 수용성 제고

대학 학생회장 선거실태 및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대부분의 대학 본부는 학생 자율이라는 명분아래 관심을 주지 않고 방치하다보니 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선거세칙들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투표가 보장되고 실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를 대학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및 기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이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사회도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관습이 통용되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선거제도가 정착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이 대학에 정착되게 하는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역량강화사업에 전자투표를 이용한 대학표준선거법 준수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한다면 각 대학은 이의 도입을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의 예산 중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대학표준선거법을 준수하는 대학은 선거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은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더 용이하게 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평가 시 선거규정 표준안의 준수여부를 반영한다면, 각 대학 본부는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결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의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나 전자투표제 도입

미국의 경우 한 날에 많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다반사이므로 전자투표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아주 익숙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전자투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모 대학 총장 선거 및 모 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경영 풍토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투표로 인한 문제점 및 학생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투표용지 몽땅이 발견, 대리투표, 투개표 부정 및 선거 관리 부정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선거 뿐 아니라 학생과 관련된 회칙개정 등을 선거를 통한 개정으로 유도하면 점차 개선되리라 보인다. 민주주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전자투표기를 지원받거나 인터넷 투표를 하는 등 전자투표제의 도입으로 공정한 선거 및 투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대학 학생회장 선거 중앙선관위 구성에 대학본부 참여

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절차의 가장 중요한 선거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학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성 및 선거 개입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선거비용의 지출 및 정산에 대한 불합리성, 선거운동 불공정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선거가 지속되다 보니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일반 학생들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선거공영제를 통한 대학본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 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공정 선거 관리를 위하여 입후보자들과 관련 없는 중립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선거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입후보자 자격 심사 강화, 공정한 선거 관리(선거절차, 토론회, 선거운동, 사무실 등)가 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선거비용의 지출 및 정산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현재 학생회비 회계의 부정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일반 학생들의 요구가 급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대학 학생회 운영도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학생문제에 필요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의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대학 사회에서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 선거과정에 일반학생 참여 확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선거참여율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더해 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참여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치현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이로 인한 실망감과 정치적 불신이 정치적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대표자 선출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유권자가 소유한 정보와 선거관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자아는 어른이 되기 이전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정치적 제반 관계를 이해함은 물론 정치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정향이 성인이 된 후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개발된다. 따라서 장래에 성인이 된 이후에 선거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때부터 올바른 정보와 선거관을 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교육에 관련된 교양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늘이기 위하여 각종 학내 학생 관련 사업에 성적 및 어학 등 뿐 아니라 선거참여 여부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본부는 대학

총학생회가 학내 문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일반 학생들의 필요로 하는 여러 문제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일반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의 이러한 참여 기회의 확대가 된다면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도 각종 선거의 투표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여겨진다.

마 선거공영제 도입

잘 알다시피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로써 선거공영제가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상당수 채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물론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후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후보들은 계속 음성적으로 선거비용을 쓸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대학 학생회 선거에서의 상당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공영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대학 본부가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면, 현재 소수의 후보자만 입후보하는 현실에서 탈피하여 여러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경비 정산을 회계 부정에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이로 인한 부정선거가 해소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선되면, 대학 학생회는 학생들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하여

대학 본부와 발전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 및 취업 등 학생들과 밀접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일반 학생들의 선거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 및 제언

가. 초·중등 학생선거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일환이지만 학생들의 무관심, 학교 및 교사의 개입 및 학부모의 과열 등의 부작용으로 현재의 상황이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의하여 민주 시민 양성으로의 선거 교육 필요성을 역설하고, 학생회 구성을 위한 표준 선거 규정 제정 및 이의 시행에 따른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를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과 절차를 따르도록 관리하도록 구성하고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 교사, 학부모에 선거 교육을 하여 현재 선거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및 교사의 학생회장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학교문화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의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회의 역할과 범주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여 학생회의 결정사항의 학교 전반에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들에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학교 사회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갖도록 선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선거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선거관을 형성하고, 성인이 되어 유권자가 되었

을 때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주인의식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학 총학생회 선거

초·중등학교의 학생회장 선거에서의 미숙함과 대학 총학생회는 자율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부른 결론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실이 지금 대학 총학생회 선거의 다양한 실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본부의 무관심과 학외 일부 세력과 연계된 운동권 학생들만의 축제로 여겨지는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주의 기본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공영제 및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 본부가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학 본부가 참여하여 일방적인 선거 과정이 모든 후보가 동등한 자격을 갖고 동등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만 된다. 그리고 셋째, 현재는 일방적인 총학 중심의 참관인이 구성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학생들의 자원 봉사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통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된다. 특히, 이들에게는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하고 선거일에는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투표가 보장되고 실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통한 대학표준선거법 시행세칙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시행하고자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및 기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이를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본부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척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역량강화사업에 대학표준선거법 준수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한다면 각 대학은 이의 도입을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의 예산 중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대학표준선거법을 준수하는 대학은 선거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은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더 용이하게 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종 대학 평가 시 대학 민주화 절차 중 현재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였지만, 전자투표를 이용한 총학생회 선거를 반영한다면 각 대학 본부는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결정하고 이의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를 통한 대학 내 민주화 절차에 따른 교수 및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거공영제 및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를 할 경우 학생들의 지도가 용이하여 기존의 부정선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대부분 해소되어 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학생들의 권한과 책임을 알게 되면 대학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중요 의무인 각종 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부록1>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

초중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규정(예시)⁹⁾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는 학생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4학년, 5학년, 6학년(중등의 경우 1학년-3학년) 각반 회장 중에서 학생회 대의원회의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5~7인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교사1인, 학부모1인 졸업생 대표1인 등 총 8-10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

9) 선거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학교선거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이상 (중등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학생) 학생으로 한다.

제6조 (투표자명단 작성)

①학급 담임선생님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학급 담임선생님은 선거일 하루 전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종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과 선거권에 결격 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7조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재적 학생으로 하되, 학교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후보자 등록)

①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3. 공약서 1부

②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추천을 받거나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추천장의 경우, 선거권 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10% 이상 20%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약심사제도)

①위원회는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공약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공약변경 권유 시 후보자는 해당공약을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권유에 이의가 있을 시 후보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이의신청이 제기 된 경우,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고, 후보자 등록일의 다음 날까지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당해 후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등록무효와 사퇴)

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6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①선거운동기간은 자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선거운동은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다.

④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①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13조 (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어깨띠·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대행사에 의뢰하여 제작할 수 없으며,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6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간 다툼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 17조 (투표)

①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⑦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따질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18조 (개표)

- ①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④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따질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19조 (당선인 결정)

①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

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 2인을 각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2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학생회 회의에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실시는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에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개표종료 직후에 선거담당 선생님이 개표결과에 대하여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얻은 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선거)

①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재선거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1조 (보궐선거)

①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을 경우 부회장 중에서 학생회 의결을 통해 회장을 결정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보궐선거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2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이내에 교장선생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교장선생님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일이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거담당 선생님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선거담당선생님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5시간 이내에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23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 16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장선생님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4조 (보칙)

①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선거담당 선생님에게 인계하고, 선거담당 선생님은 이를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장선생님이 결정한다.

③이 규정은 학생회의 의결과 교직원회의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록2>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규정 표준안

가. ○○대학교 선거시행세칙(off-line)

제정 2013. 00. 00.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생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여 00대학교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상호 협력하여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각급 학생회 선거에 적용한다.

② 총학생회의 산하·특별기구(동아리연합회 등)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특별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선거공영제) 대학본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여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각 급 학생회 선거를 관리·지원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에 재학 중인 본교 재학생에게만 주어진다.

② 재학 여부의 확인은 투표일 7일 전을 기준으로 학생과에 의뢰하여 정보전산원에서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통해 확인한 등록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재학생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총학생회장 후보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각각 선거일 현재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남은 학기가 2학기 이상인 학생
2. 대의원 및 각 급 학생회 간부가 아닌 자로, 대의원 및 각급 학생회 간부가 후보로 나서고자 할 때는 추천 서명 행위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3. 재학생 10,000명 미만의 대학은 재학생 200명~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은 후보
4. 재학생 10,000명 이상의 대학은 재학생 500명~1,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은 후보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학생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1. 각급 학생회 선거관련 업무의 심의, 확정, 기획 및 집행
2. 각급 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대·내외 홍보 활동
3. 확정된 선거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협의, 감시 및 위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4. 공영선거에 따른 선거자금의 편성·운영 및 결산 공개
5.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감독 및 결정·집행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6. 그 밖에 각급 학생회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8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학본부 학생처와 협의하여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3인, 동아리 연합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중앙운영위원 직에 있는 자 중에서 한다.

④ 재선거·보궐선거도 학생들은 현재 중앙운영위원 직에 있는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위원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두고, 학생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생처장을 보한다. 단,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위원 1명을 보하여 권리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및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학생위원은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 산하·특별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1조(위원의 해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정한 서식에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급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한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한다.

제12조(위원의 사임·추가 임명)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임 요청서는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임 또는 해임시 임명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 임명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또한, 개별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사안 협의를 위한 요청이 있을 때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개회·의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하고 합의하여 의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표결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출석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각 선거운동본부에서의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16조(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단과대학의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보하고, 위원은 각 학과(학부)의 장을 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0조(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단,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사임하면 단과대학 학생회회 및 산하·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서는 제11조(위원의 해임)를 준용하며,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제11조(위원의 해임)에 따라 해임되면 해임 이후에도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없다.

제17조(집행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보하며, 인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③ 집행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0조(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사임한 이후 이 회 및 이 회 산하기

구·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관리·감독하며, 선거 시행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집행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집행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중앙집행위원

2. 각 단과대학, 학부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② 중앙집행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선거와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제4장 선 거

제1절 선거 일정 및 선거 공고

제19조(선거 일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기간은 선거 시행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 이의제기, 당선 확정일 까지로 구성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3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10일 이내, 투표일을 5일 이내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선거 공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12조 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3. 제22조 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제22조 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선거 예치금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21조(추천) ① 입후보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며,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운동원은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③ 추천행위는 학내에서만 실시하고,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무작위 배포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22조(후보 등록 신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팀은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신청서 정, 부회장 각 1부

2. 재학생 500명 ~ 1,000명 이내의 추천서
 3. 총학생회장 후보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재학증명서 각 1부
 4. 공정선거 서약서 각 1부
 5. 포스터용 사진(파일 제출)
 6. 출마 소견문(A4 용지 1매, 파일 제출)
 7.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선거운동본부명(파일 제출)
 8. 선거 예치금(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9. 선거운동원 명단 및 사진 제출(파일 제출)
-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19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 할 수 없다.

제23조(가등록) ① 등록기간 내에 구비서류(제22조 1항)를 완비하지 못한 후보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② 가등록된 후보자가 24시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때 가등록은 취소된다.

제24조(후보 등록 심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후보, 부총학생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불허) ① 심사 시 결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 불허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결정 통보한다. 단, 등록불허 결정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26조 (후보등록) 제22조 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27조 (규칙 확정 회의) ① 제24조 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에 언급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
2. 제48조(사무실)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위치
3. 그 밖에 선거 제반 사항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106조에 따라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 사퇴는 입후보자의 의사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행된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②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양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29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학과, 학번
2.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등록학기 및 이력
3. 선거운동본부명
4.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5. 포스터용 사진

② 핵심 선거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비슷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3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를 말하며,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이 회 집행·산하·특별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만 할 수 있다.

제31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제32조(사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인터넷·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21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
2.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4.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단과대학·학부 회장 및 부학생회장, 학부·과·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특별기구 장의 직에 있는 자
5.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의 직에 있는 자
6. 대학교의 학부 재학생·휴학생이 아닌 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 및 집행위원이 사임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장 및 위원의 직에 있던 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34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합동소견발표회
2. 공개토론회 참가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공동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 SNS 등 인터넷의 활용
6. 선거운동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35조(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분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등교시간, 점심시간 및 하교시간의 정문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과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 제정을 통해 각 선거운동본부에 평등하게 할애하여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⑤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36조(합동소견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내 주요 장소에서의 합동

소견발표를 2회 이하로 시행한다.

- ② 합동소견발표에서의 발표 순서는 발표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 ③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장에 발표회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후보자가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소견발표 자격을 박탈한다.
 - ④ 발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며, 후보자는 발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후보자가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발표를 중단시킨다.
-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가 끝날 때까지 합동소견발표장을 떠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으로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 ⑥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분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⑦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⑧ 합동소견발표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중에서 진행한다.

제37조(공개토론회) ① 공개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들과 협의하여 1회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공개토론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공개토론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개토론회 참석 자격을 박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③ 공개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④ 공개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개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중에서 한다.

⑥ 공개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가 협의하여 공개한다.

제38조(게시물·선전물의 허가 및 지원)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② 대학본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여 기본 유인물 및 게시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본부를 통해 지원한다.

③ 기본 유인물과 게시물이라 함은 포스터 1종(2도 이하, 4절 이하) 500매 까지, A0 크기의 출력 대자보 100부 까지, 가로 10m, 세로 1.1m 이하의 출력 현수막 30개 까지를 말한다. 또한, 유인물 2종(2도 이하)에 대해 각 5,000부와 각 후보당 35페이지 이하의 공동정책자료집 5,000부가

포함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 결과 게시물·유인물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격이나 내용이 부적합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유인물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선전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 게시·배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게시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0 크기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모든 게시판에 부착하는 대자보를 합하여 100매가 넘을 수 없으며, 종류는 제한이 없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정문, 중앙도서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학내 장소에 가로10m, 세로 1.1m 이하의 현수막을 30개 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착 장소 및 제2항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0조(유인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4종 이하로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유인물의 구성은 인쇄 매체 1매로 한다.

③ 유인물의 배포 시 크기는 A4 크기 이하로 제한한다. 단, 유인물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2 크기 이하로 한다.

④ 기본 유인물을 제외한 각 선거운동본부의 유인물은 회당 5,000부 이하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정책자료집) ① 공동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크기 35쪽 이내로 제작한다. 부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협의하여 5,000부 이내로 결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공동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동정책자료집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배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의 배포와 동시에 공동정책자료집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게시한다.

제42조(특수선전물) ① 유인물, 현수막, 대자보를 제외한 특수 선전물은 4종 이하로 제한하고, 출사표는 제외한다.

② 특수선전물은 수작업만 가능하며 조형물은 1종당 50개 이하, 선전물 높이는 3m 이하로 제한한다. 영상물은 1개 완성본을 1종으로 취급한다. 또한, 명함, 풍선과 애드벌룬은 배포 및 설치를 금지한다.

③ 영상제작물은 학교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그 밖의 인터넷, SNS 홍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의 수를 제한하고, 각 본부는 해당 아이디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아이디를 보고 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아이디를 공고한다.

⑤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행위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그 밖의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절 선거운동본부

제44조(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 정·부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운동원은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어야 한다.

제45조(선거운동원의 등록)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원 등록은 제22조(후보 등록 신청)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공간에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단,

선거운동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 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⑥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46조(선거운동복)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복으로 하여 선거운동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선거운동복을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이 착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7조(활동과 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시 집행위원을 파견하여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관리관,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할 수 있는 학내 공간을 마련하여 각 선거운동본부로 통보하고,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제공한다.

③ 총학생회의 집행·산하·특별기구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5절 이의제기

제49조 (이의제기의 방식)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관리관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50조 (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징 계

제51조(징계) 징계라 함은 이 세칙에 징계 사유를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②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③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3조(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1. 제45조 제3항의 선거운동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2. 제38조 제5항의 게시물·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3. 제46조 제3항의 선거운동복의 심의 결과 선거운동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4. 제49조 제5항의 이의제기의 방식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5.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54조(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두 번 받았을 때(이 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은 소멸한다)
3. 제48조 제4항의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4. 제22조 제1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5. 제33조 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6. 제35조 제6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7. 제36조 제7항의 합동소견발표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37조 제2항의 공개토론회 시작 10분 전까지 공개토론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9. 제38조 제6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10. 제39조 제4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11. 제41조 제2항의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12. 제42조 제1, 2, 3항의 특수선전물의 제한을 어겼을 때
 13. 제43조 제5항의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
 14. 제45조 제6항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등록했을 때
 15. 제46조 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복을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이 착용할 때
 16. 제86조 제2항의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17.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 제55조(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이 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21조 제3항의 학교 밖에서의 추천 및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를 할 때
4. 제32조제3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5. 제38조 제7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포할 때
6.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운동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7.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운동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8.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때
10.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1.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2.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

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 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13.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때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제56조(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고를 받거나, 주의 2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징계 취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절 투 표(오프라인 투표)

제57조(투표방법) ① 총학생회장 정·부회장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투표관리) ①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특정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이 때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해당 관할의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 준한다.

③ 투표구를 관리·감독하는 자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CCTV 촬영 사각지대에 있는 투표소의 경우 최소 두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제59조(투표일·투표시간) ① 투표는 연장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시행한다.

② 투표 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구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투표구·투표소) ①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 1개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관리관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⑤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안된다.
- ⑥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 ⑦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규칙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정한 순서에 의해 게재 순서를 정한다.
- ③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기권란을 두어야 한다.
- ④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참관인의 확인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투표관리관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 ⑤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제62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각 투표일 8시 30분까지 각 투표구로 송부한다.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제63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참관인의 투표자 신분증 접수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서명
4. 투표참관인 및 선거운동본부별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64조(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참관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투표용지 배부) ① 투표참관인 및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확인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미리 서명·날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단,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투표관리관을 파견하지 않은 투표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투표관리관 확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표·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개 팀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대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67조(투표관리관) ① 투표관리관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관리관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관리관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④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관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명찰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 ⑥ 투표참관인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68조(투표관리관의 이의제기) ① 투표관리관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투표관리관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④ 투표관리관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관리관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 ⑤ 투표관리관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투표관리관의 부정행위)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제46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부의 착용은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 ②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해당 투표관리관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투표관리관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을 파견할 수 없다.

제70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후보자의 투표 권유 행위)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2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3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8시 1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 및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참관인 및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명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74조(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과 투표관리관의 입회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과 투표관리관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③ 자물쇠를 이용해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75조(투표함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76조(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절 투표 성립

제77조(투표 성립 요건) 총학생회 선거는 3일간의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9절 개 표

제78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79조(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80조(개표장)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1조(개표소) ①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
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
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82조(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각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
된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제83조 (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투표인 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제66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84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

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

제85조(투표함의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②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③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를 넘을 때 선거는 무효가 된다.

제86조(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②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87조(개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88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9조(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당선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기록물관리세칙」에 따라 보관한다.

제10절 당 선

제90조(당선의 기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을 확정할 수 없으며, 제100조 및 제101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최고 득표자가 두 팀 이상일 때
2. 1위 득표 팀과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

제91조(당선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번
2.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5.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 득표수 및 득표율

제92조(선거비 공개의 원칙) 개표 공고 후 1주일 안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1절 선거 예치금

제93조(목적) 공정선거를 확립하고, 부정선거 등으로 인한 선거 중도 하차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선거 예치금을 받도록 한다.

제94조(납부와 금액) 예치금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때 납부한다. 금액은 30만원 이하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5조(예치금 환급) ① 예치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하며,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급 기한은 개표 공고 후,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거비 공개를 한 시점에서 3일 이내로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가 부정선거로 인한 사퇴, 혹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비 공개를 하지 않았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치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④ 예치금 미환급액에 대한 활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하며 결정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제12절 선거비 상한액 및 공개

제96조(목적) 공정선거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선거비 지출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액을 제외한 선거비에 대해 상한액을 확정한다.

제97조(선거비 상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액을 제외한 각 후보별 선거비는 선거권을 가진 총 인원을 기준으로 선거권자 1인 2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선거운동원의 식비는 제외한다.

제98조(선거비 지출) 선거비 지출은 대학 회계법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지출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99조(선거비 공개) ① 개표 공고 후, 1주일 안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지정된 기간 이내에 선거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와 논의 후, 차후 공개일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새로 지정하는 기간은 7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③ 당선된 선거운동본부가 선거비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당선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13절 재투표 및 재선거

제100조(재투표·결선투표) ①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팀을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최고 득표조가 두 팀 이상인 때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팀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④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101조(재선거) ① 재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보다 많을 때, 후보가 한 조이면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아닐 때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② 재선거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평가

제102조(선거평가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부터 당선확정 공고 3일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제103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평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제104조(업무) 선거평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본부 징계에 대한 기록과 판단 근거
3. 낙선 선거운동본부 공약의 집행 가능 여부

제105조(결과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평가회의 논의 결과 및 선거평가회의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을 공고한다.

제6장 선거시행규칙

제106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7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의
3. 제26조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

부 칙

이 세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대학교 선거시행세칙(on-line)

제정 2013. 00. 00.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생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여 00대학교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상호 협력하여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각급 학생회 선거에 적용한다.

② 총학생회의 산하·특별기구(동아리연합회 등)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특별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선거공영제) 대학본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여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각 급 학생회 선거를 관리·지원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에 재학 중인 본교 재학생에게만 주어진다.

② 재학 여부의 확인은 투표일 7일 전을 기준으로 학생과에 의뢰하여

정보전산원에서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통해 확인한 등록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재학생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총학생회장 후보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각각 선거일 현재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남은 학기가 2학기 이상인 학생
2. 대의원 및 각 급 학생회 간부가 아닌 자로, 대의원 및 각급 학생회 간부가 후보로 나서고자 할 때는 추천 서명 행위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3. 재학생 10,000명 미만의 대학은 재학생 200명~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은 후보
4. 재학생 10,000명 이상의 대학은 재학생 500명~1,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은 후보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학생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1. 각급 학생회 선거관련 업무의 심의, 확정, 기획 및 집행
2. 각급 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대·내외 홍보 활동
3. 확정된 선거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협의, 감시 및 위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4. 공영선거에 따른 선거자금의 편성·운영 및 결산 공개
5.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감독 및 결정·집행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6. 그 밖에 각급 학생회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8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학본부 학생처와 협의하여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3인, 동아리 연합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중앙운영위원 직에 있는 자 중에서 한다.

④ 재선거·보궐선거도 학생들은 현재 중앙운영위원 직에 있는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위원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두고, 학생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생처장을 보한다. 단,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위원 1명을 보하여 권리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및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학생위원은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 산하·특별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1조(위원의 해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정한 서식에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급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한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한다.

제12조(위원의 사임·추가 임명)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청서는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시 임명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 임명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또한, 개별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사안 협의를 위한 요청이 있을 때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개회·의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하고 합의하여 의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표결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출석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각 선거운동본부에서의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16조(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단과대학의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보하고, 위원은 각 학과(학부)의 장을 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0조(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단,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사임하면 단과대학 학생회회 및 산하·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서는 제11조(위원의 해임)를 준용하며,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제11조(위원의 해임)에 따라 해임되면 해임 이후에도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없다.

제17조(집행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둔다.

② 집행위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보하며, 인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③ 집행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0조(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은 사임한 이후 이 회 및 이 회 산하기

구·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관리·감독하며, 선거 시행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집행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집행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중앙집행위원
2. 각 단과대학, 학부 및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② 중앙집행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선거와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제4장 선 거

제1절 선거 일정 및 선거 공고

제19조(선거 일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기간은 선거 시행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 이의제기, 당선 확정일 까지로 구성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3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10일 이내, 투표일을 5일 이내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선거 공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12조 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3. 제22조 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제22조 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선거 예치금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21조(추천) ① 입후보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며,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운동원은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③ 추천행위는 학내에서만 실시하고,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무작위 배포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22조(후보 등록 신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팀은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신청서 정, 부회장 각 1부

2. 재학생 500명 ~ 1,000명 이내의 추천서
3. 총학생회장 후보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재학증명서 각 1부
4. 공정선거 서약서 각 1부
5. 포스터용 사진(파일 제출)
6. 출마 소견문(A4 용지 1매, 파일 제출)
7.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선거운동본부명(파일 제출)
8. 선거 예치금(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9. 선거운동원 명단 및 사진 제출(파일 제출)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19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 할 수 없다.

제23조(가등록) ① 등록기간 내에 구비서류(제22조 1항)를 완비하지 못한 후보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② 가등록된 후보자가 24시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때 가등록은 취소된다.

제24조(후보 등록 심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후보, 부총학생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불허) ① 심사 시 결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 불허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결정 통보한다. 단, 등록불허 결정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26조 (후보등록) 제22조 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27조 (규칙 확정 회의) ① 제24조 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에 언급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
2. 제48조(사무실)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위치
3. 그 밖에 선거 제반 사항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106조에 따라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 사퇴는 입후보자의 의사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행된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②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양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29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학과, 학번
2.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등록학기 및 이력
3. 선거운동본부명
4.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5. 포스터용 사진

② 핵심 선거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비슷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3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를 말하며,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이 회 집행·산하·특별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만 할 수 있다.

제31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제32조(사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인터넷·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21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
2.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4.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단과대학·학부 회장 및 부학생회장, 학부·과·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특별기구 장의 직에 있는 자
5.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의 직에 있는 자
6. 대학교의 학부 재학생·휴학생이 아닌 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 및 집행위원이 사임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장 및 위원장의 직에 있던 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34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합동소견발표회
2. 공개토론회 참가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공동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 SNS 등 인터넷의 활용
6. 선거운동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35조(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분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등교시간, 점심시간 및 하교시간의 정문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과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 제정을 통해 각 선거운동본부에 평등하게 할애하여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⑤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36조(합동소견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내 주요 장소에서의 합동

소견발표를 2회 이하로 시행한다.

- ② 합동소견발표에서의 발표 순서는 발표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 ③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장에 발표회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후보자가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소견발표 자격을 박탈한다.
- ④ 발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며, 후보자는 발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후보자가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발표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가 끝날 때까지 합동소견발표장을 떠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으로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 ⑥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분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⑦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⑧ 합동소견발표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중에서 진행한다.

제37조(공개토론회) ① 공개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들과 협의하여 1회 개최한다.

- ②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공개토론회 시작 시

각 10분 전까지 공개토론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개토론회 참석 자격을 박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③ 공개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④ 공개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개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중에서 한다.

⑥ 공개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가 협의하여 공개한다.

제38조(게시물·선전물의 허가 및 지원)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② 대학본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여 기본 유인물 및 게시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본부를 통해 지원한다.

③ 기본 유인물과 게시물이라 함은 포스터 1종(2도 이하, 4절 이하) 500매 까지, A0 크기의 출력 대자보 100부 까지, 가로 10m, 세로 1.1m 이하의 출력 현수막 30개 까지를 말한다. 또한, 유인물 2종(2도 이하)에 대해 각 5,000부와 각 후보당 35페이지 이하의 공동정책자료집 5,000부가 포함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 결과 게시물·유인물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격이나 내용이 부적합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유인물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선전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 게시·배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게시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0 크기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모든 게시판에 부착하는 대자보를 합하여 100매가 넘을 수 없으며, 종류는 제한이 없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정문, 중앙도서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학내 장소에 가로10m, 세로 1.1m 이하의 현수막을 30개 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착 장소 및 제2항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0조(유인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4종 이하로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유인물의 구성은 인쇄 매체 1매로 한다.

③ 유인물의 배포 시 크기는 A4 크기 이하로 제한한다. 단, 유인물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2 크기 이하로 한다.

④ 기본 유인물을 제외한 각 선거운동본부의 유인물은 회당 5,000부 이하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정책자료집) ① 공동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크기 35쪽 이내로 제작한다. 부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협의하여 5,000부 이내로 결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공동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동정책자료집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배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의 배포와 동시에 공동정책자료집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게시한다.

제42조(특수선전물) ① 유인물, 현수막, 대자보를 제외한 특수 선전물은 4종 이하로 제한하고, 출사표는 제외한다.

② 특수선전물은 수작업만 가능하며 조형물은 1종당 50개 이하, 선전물 높이는 3m 이하로 제한한다. 영상물은 1개 완성분을 1종으로 취급한다. 또한, 명함, 풍선과 애드벌룬은 배포 및 설치를 금지한다.

③ 영상제작물은 학교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그 밖의 인터넷, SNS 홍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의 수를 제한하고, 각 본부는 해당 아이디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아이디를 보고 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아이디를 공고한다.

⑤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행위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그 밖의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절 선거운동본부

제44조(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 정·부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운동원은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어야 한다.

제45조(선거운동원의 등록)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원 등록은 제22조(후보 등록 신청)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공간에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단, 선거운동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 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⑥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46조(선거운동복)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복으로 하여 선거운동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선거운동복을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이 착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7조(활동과 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시 집행위원을 파견하여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관리관,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할 수 있는 학내 공간을 마련하여 각 선거운동본부로 통보하고,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

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제공한다.

③ 총학생회의 집행·산하·특별기구 등 각 선거운동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5절 이의제기

제49조 (이의제기의 방식)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관리관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50조 (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징 계

제51조(징계) 징계라 함은 이 세칙에 징계 사유를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②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③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3조(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1. 제45조 제3항의 선거운동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2. 제38조 제5항의 게시물·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3. 제46조 제3항의 선거운동부의 심의 결과 선거운동부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4. 제49조 제5항의 이의제기의 방식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5.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

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54조(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두 번 받았을 때(이 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은 소멸한다)
3. 제48조 제4항의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4. 제22조 제1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5. 제33조 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6. 제35조 제6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7. 제36조 제7항의 합동소견발표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37조 제2항의 공개토론회 시작 10분 전까지 공개토론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9. 제38조 제6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10. 제39조 제4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11. 제41조 제2항의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12. 제42조 제1, 2, 3항의 특수선전물의 제한을 어겼을 때
 13. 제43조 제5항의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
 14. 제45조 제6항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등록했을 때
 15. 제46조 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복을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이 착용할 때
 16. 제86조 제2항의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17.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 제55조(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이 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21조 제3항의 학교 밖에서의 추천 및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를 할 때
 4. 제32조제3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5. 제38조 제7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

포할 때

6.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운동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7.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운동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8.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때
 10.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1.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2.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13.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때
-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

동 공간에 게시한다.

제56조(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고를 받거나, 주의 2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 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징계 취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절 투 표(온라인 투표)

제57조(투표방법) ① 총학생회장 정·부회장 선거의 투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 중 선거당일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한 부재자투표의 경우 전자선거와 예외로 투표용지에 의한 기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투표관리) ①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특정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이 때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해당 관할의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한다.

③ 투표구를 관리·감독하는 자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CCTV 촬영 사각지대에 있는 투표소의 경우 최소 두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제59조(투표일·투표시간) ① 투표는 연장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시행한다.

② 투표 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구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투표구·투표소) ①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②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 1개 당 관리인증용 노트북 1대, 유권자 투표용 노트북 1대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도서관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다고 판단되는 투표구의 경우 추가 비치가 가능하며 그 장소와 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다.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관리관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

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단대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⑦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투표화면) ① 투표화면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룰미팅에서 각 선본이 정한 순서에 의해 게재 순서를 정한다 .

제62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 투표참관인의 투표자 신분증접수 본인 확인

② 투표자에 의한 학번입력 후 유권자명과 신분증명의 일치 확인

③ 투표용 인증용지 출력 및 확인

④ 출력된 인증용지와 신분증을 투표자에게 반납 후 기표소로 안내

⑤ 기표 및 투표

제63조(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전자투표 인증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의 서명은 본인에 의한 학번입력으로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참관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전자투표 인증 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기표·투표) ① 선거인은 인증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인증 용지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투표화면에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기표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대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65조(투표관리관) ① 투표관리관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 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관리관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관리관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 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관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명찰을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

⑥ 투표참관인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투표관리관의 이의제기) ① 투표관리관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관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④ 투표관리관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관리관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투표관리관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7조(투표관리관의 부정행위)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제45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부의 착용은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총학생회칙」 및 이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해당 투표관리관의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투표관리관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을 파견할 수 없다.

제68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후보자의 투표 권유 행위)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0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화면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화면은 무효로 한다.

제71조(서버로그 및 선거인명부 처리) 개표 후의 서버로그 파일 등 전자투표와 관련한 전산자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와 함께 선관위에서 참관인과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당선 확정 공고 후 1개월 동안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에게 열람시킬 의무가 있다.

제8절 투표 성립

제72조(투표 성립 요건) 총학생회 선거는 3일간의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9절 개 표

제73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74조(서버 열람) ① 선관위원장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즉시 서버열람을
진행한다.

② 개표 시에는 선관위 재적인원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개표장소가 소란하거나, 개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를 전면 또는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제75조(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76조(개표장)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7조(개표소) ①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
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
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78조(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투표인 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개표 화면 제공
3. 개표참관인의 득표 자료 확인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5. 제2호부터 제4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6.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7. 최종 결과 발표

제79조(투표소의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인증용지 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소의 인증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②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소의 인증용지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③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를 넘을 때 선거는 무효가 된다.

제80조(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②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81조(개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82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절 당 선

제83조(당선의 기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을 확정할 수 없으며,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최고 득표자가 두 팀 이상일 때

2. 1위 득표 팀과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

제84조(당선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 학번
2.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5.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 득표수 및 득표율

제85조(선거비 공개의 원칙) 개표 공고 후 1주일 안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1절 선거 예치금

제86조(목적) 공정선거를 확립하고, 부정선거 등으로 인한 선거 중도 하차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선거 예치금을 받도록 한다.

제87조(납부와 금액) 예치금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때 납부한다. 금액은 30만원 이하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8조(예치금 환급) ① 예치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하며,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급 기한은 개표 공고 후,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거비 공개를 한 시

점에서 3일 이내로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가 부정선거로 인한 사퇴, 혹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비 공개를 하지 않았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치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④ 예치금 미환급액에 대한 활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하며 결정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제12절 선거비 상한액 및 공개

제89조(목적) 공정선거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선거비 지출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액을 제외한 선거비에 대해 상한액을 확정한다.

제90조(선거비 상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액을 제외한 각 후보별 선거비는 선거권을 가진 총 인원을 기준으로 선거권자 1인 2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선거운동원의 식비는 제외한다.

제91조(선거비 지출) 선거비 지출은 대학 회계법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지출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92조(선거비 공개) ① 개표 공고 후, 1주일 안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지정된 기간 이내에 선거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와 논의 후, 차후 공개일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새로 지정하는 기간은 7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③ 당선된 선거운동본부가 선거비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당선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12절 재투표 및 재선거

제93조(재투표·결선투표) ①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팀을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최고 득표조가 두 팀 이상인 때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팀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④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94조(재선거) ① 재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지지선분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보다 많을 때, 후보가 한 조이면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아닐 때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② 재선거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평가

제95조(선거평가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부터 당선확정 공고

3일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제96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평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제97조(업무) 선거평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본부 징계에 대한 기록과 판단 근거
3. 낙선 선거운동본부 공약의 집행 가능 여부

제98조(결과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평가회의 논의 결과 및 선거평가회의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을 공고한다.

제6장 선거시행규칙

제99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0조(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의
3. 제27조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

부 칙

이 세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김현진(2011). *고등학교 학생 대표자 선출 방식 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사립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성(2006). 민주적 선거 제도, 『헌법학 연구』, 제7권 제3호.
- 신지선(역).(2006). 『협상이 즐겁다』. W미디어.
- 이한나(2009). 청소년의 학생회 임원 활동 참여와 법의식 관계 조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석훈 역(2007). 『SQ 사회지능』. 웅진지식하우스
- 전병건(2007). *고등학교 학생 선거 활동 참여 정도가 정치 의식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 『학교 선거 매뉴얼: 초·중·고등학교 교사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실.
- 최순영(2004). 『학생자치활동 현황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1993). 『민주적 학생지도 민주적 학교 운영』.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Adams, A. E.(1944). *Democratic Citizenship in Today's World*. San Francisco: Charles Scribner's Sons.
- Aron, R.(1974). Is multinational citizenship possible?. In B. S. Turner and P. Hamilton(ed.), *Citizenship*, V. II. London: Routledge.
- Barbalet, J. M.(1988). *Citizenship*. Bristol: Open University Press.

Graham, K.(1986). *The Battle of Democracy*. Brighton: Wheatsheaf Books Ltd..

Habermas, J.(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oston Press.

Ichilov, O.(1990).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Robertson, R.(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Walzer, M. (1994). *Multiculturalism and individualism, Dissent*, Spring.

(비매품)

초·중등 및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발 행 2013년 10월
발 행 인 안 양 옥
발 행 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1 (우 137-715)
전화:(02)570-5680~3 팩스:(02)570-5689
등 록 2013.1.7. (등록번호 110221-0010313)
인 쇄 처 **고 흥 기 획** (☎ 02-507-275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